

되었습니다. 5페이지 이하는 위원님들께서 안전심의과정에서 참고하실 자료로서 내무부장관님의 정원승인 공문서 사본과 현행조례 전문 그리고 지방자치법중 개정법을 전문 그리고 내무부장관의 정원승인 권한 근거규정등을 참고자료로 올렸습니다.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설치 및

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○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.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2년 1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1992년 1월 9일

3. 제안이유

- 도의회 효율적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(법률 제4464호, '91. 12. 13)되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(지기 01210-12628 '91. 12. 28)도의회사무직원의 정원 9명이 보장됨에 따라
- 충청북도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제명을 충청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의 "사무국"을 "사무처"로 "사무국장"으로 개칭하고 현재 "39명"으로 되어 있는 사무직원 정수를 "48"명으로 개정하라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조례제명, 사무국명칭, 사무직원의 정수개정(조례제1조내지제4조)

현	행	개	정
• 제명 : 충청북도 “의회사무국”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	• 제1조내지 제4조중 “사무국”, “사무국장”	• 충청북도 “의회사무처”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	• 제1조내지 4조중 “사무처”, “사무처장”
• 제4조중 사무직원정수 “39명”		• 제4조중 사무직원정수 “48명”	

5. 검토의견

- 도의회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(법률 제4464호 '91. 12. 31)되고 지난 1991년 12월 28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도의회사무국의 사무처리 부족인력 9명(운영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전문위원 2명, 위원실보조 2명, 기록요원 2명, 자료조사지원 2명, 부의장실 안내요원 1명)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8항 및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원 승인됨에 따라 조례제정 및 사무국 명칭과 사무직원 정수를 현재의 “39명”에서 “48명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○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.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이병두위원 위원장님!

○ 위원장 김연권 이병두위원님 말씀하세요

○ 이병두위원 이병두입니다. 물론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한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문제와 연관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